

근로시간 단축 추진과 관련한 SW산업계 건의서

- SW사업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/탄력적
근로시간 단위(정산) 기간 확대를 중심으로-

2018. 5.

SW산업 유관 협·단체 일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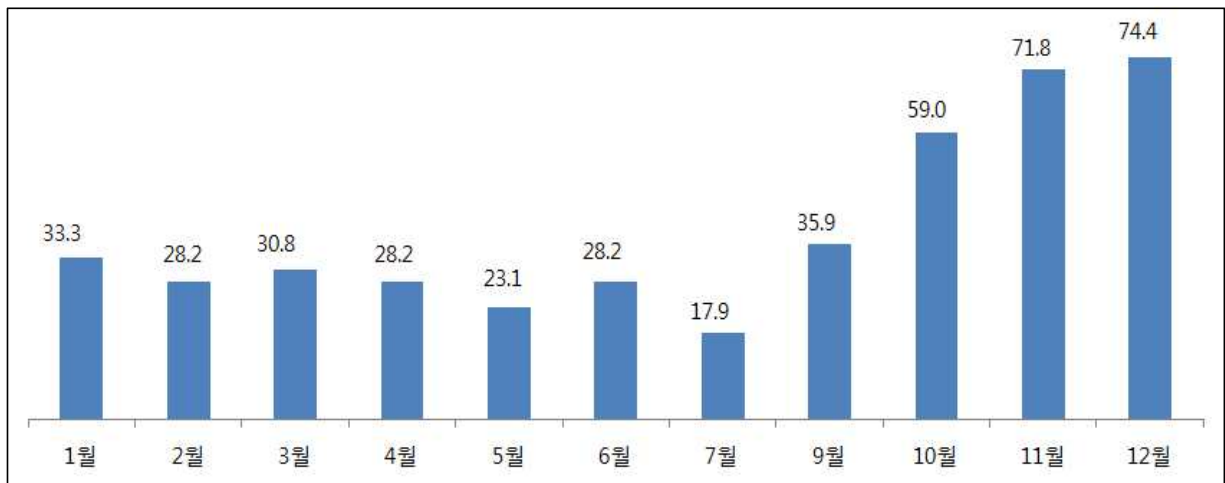
1. 건의 주요 배경

□ SW업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SW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

○ (수주형 SW개발 사업의 특성)

- 수주형 SW개발사업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개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, 특히 가시화 수준이 높아지는 종료시점에 요구사항이 집중되는 경향 존재
- 또한, 공공사업의 경우 발주시기와 무관하게 대부분 연말로 설정되어 사업수행기간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, 사업종료에 압박하여 불가피한 초과근로가 빈번하게 발생

〈 월별 초과근무 발생 빈도 설문조사 결과 〉



※ 해당월의 수치는 중복답변의 백분율

[출처 : 한국SW산업협회 회원사 의견조사, '18.3]

○ (SW 유지관리·운영 사업의 특성)

- 기 구축된 SW를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예기치 못한 장애발생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해 초과근무가 수시로 발생하는 구조

- 전체 SW산업규모에서 SW유지관리·운영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 분야에 상당수의 기술자가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

* 공공SW시장의 경우 유지관리 운영사업 규모는 전체 대비 41.2% 수준

- 향후 구축된 SW 및 정보화시스템의 대형화, 고도화 추세로 볼 때 긴급 상황 대비 요원들의 초과근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○ (보안관제서비스의 특성)

“보안관제서비스”란 고객의 정보자산 보호와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전문 보안업체에 아웃소싱하여 각종 침입에 대해 중앙 관제 센터에서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, 선제적 예방 및 대응하는 서비스

- 보안관제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실시간 서비스로 야간근무, 휴일근무가 필수적이며, 사이버위기 경보단계에 따른 비상근무체제 전환* 시 추가 인력투입으로 인한 초과근무가 수시로 발생

* 비상근무체제 전환 기준인 사이버위기 경보단계 ‘주의’ 발령일은 연평균 90일 이상이며, 일부 기관은 ‘관심’ 단계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

- 최근 2년간 사이버위기 경보단계 발령기간(관심, 주의): ‘16년(359일), ‘17년(365일)을 감안할 때, 향후 비상근무체제 전환에 따른 초과근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마련 필요

<최근 2년간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현황>

No.	경보발령내용	발령일자
1	[관심 경보발령] 국가공공기관 사이버위협 '관심' 경보 발령	2016-01-08
2	[주의 경보발령] 국가공공기관 사이버위기 '주의' 경보 상향발령	2016-02-11
3	[경보 하향발령] 국가공공기관 사이버위기 경보 "주의" -> "관심" 하향조정	2016-05-11
4	[주의 경보발령] 국가공공기관 사이버위기 '주의' 경보 상향발령	2017-03-09
5	[경보 하향발령] 국가공공기관 사이버위기 경보 "주의" -> "관심" 하향조정	2017-04-07
6	[주의 경보발령] 국가공공기관 사이버위기 '주의' 경보 상향발령	2017-05-08
7	[경보 하향발령] 국가공공기관 사이버위기 경보 "주의" -> "관심" 하향조정	2017-05-11
8	[주의 경보발령] 국가공공기관 사이버위기 '주의' 경보 상향발령	2017-05-14
9	[경보 하향발령] 국가공공기관 사이버위기 경보 '주의' -> '관심'으로 하향조정	2017-07-13
10	[정상환원] 사이버위기 경보단계 "관심"에서 "정상"으로 환원	2018-03-20

[출처: 국가정보원 홈페이지]

11. 건의 사항 및 향후 업제 추진 계획

건의 사항 1 : 고용노동부

-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(현행 1개월)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(현행 3개월)을 확대(6개월 이상 1년 이내)하여 SW사업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림
- 앞서 살펴본 SW사업의 특성상 SW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기업별 선택/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라 사료
 - 단, SW사업 특성상 초과근무 발생 주기가 최소 6개월 단위*로 변동하여 현행 선택/탄력적 근로시간 단위(정산)기간을 적용할 경우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
 - * 월별 초과근무 발생빈도 설문조사(한국SW산업협회, '18.3)에서 빈도가 높은 4개월과 사업종료 후 후속작업(하자보수, 결산 등 2개월) 등을 감안
 - SW산업은 지식기반의 전문영역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창조성과 자

을성이 강조되는 SW개발구축과 SW유지관리·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어, 업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선호

- 향후 SW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별 기업별, 혹은 유관 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기로 함

< 향후 SW업계 주요 추진 계획 >

- * 종사자 교육 강화를 통한 생산성 및 역량 강화 도모
- * 신규채용 확대를 통한 기업 근로환경 개선 및 산업 전반의 고용효과 창출
- *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, 근로시간 단축 미시행 중인 300인 이하 하도급, 공동수급자 등에게 업무·책임 전가를 금지하는 자정 캠페인 추진

※ SW 유관 협·단체를 중심으로 추진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선도

건의 사항 2 :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

□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필요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을 건의 드립니다

□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SW사업이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 드립니다

- 공공SW사업의 경우, 이전 해에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된 사업예산이므로 필요시 경과기간을 두어 계약금액의 조정*이 필요

* 예산의 한계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피한 경우, 업무범위, 계약기간조정 등의 방법도 고려

- 또한, 주5일 근무제 시행 당시, 재경부(현 기획재정부)의 발주담당자에게 공지한 회계통첩이 동일하게 유효하도록 요청 드립니다

※ (참고) 주5일 근무제 시행 시 재경부(2004)의 회계통첩*

-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약 상대방(수주자)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

-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준공일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상대자에 법정근로시간외의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,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시달

* 법정근로시간단축(주5일 근무제 시행)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(2004.07.09. 회계제도과-1047)

건의 사항 3 : 고용노동부

□ 근로시간단축 시행일 이전 SW사업(2018.07.01. 이전 발주된 사업)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예산과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예외처리를 요청 드립니다

□ 기 진행 중인 SW사업에서 계획되지 않은 추가인력의 신규확보는 어려움

- 현재, 모든 SW분야의 인력은 부족하여*, 적합한 인력을 단시간 내 채용하여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계약금액 조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

* '18 ~ '22년 동안 AI 9,986명, 클라우드 335명, 빅데이터 2,785명, AR/VR 18,727명 등 4개 분야에서만 총 31,833명 부족 예상(SW정책연구소, '유망 SW분야의 미래일자리 전망' '18.4)

건의 사항 4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행정안전부

□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 조정(합의)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법정근무시간외의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는 등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건의 드립니다

□ 계약상대자(수주자)와 합의 없이 발주자가 직·간접적으로 법정근무시간을 준수하기 어렵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없도록 수주자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관리감독도 요청 드립니다

건의 사항 5 : 고용노동부, 행정안전부

□ SW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대국민서비스(금융/통신/보건 등), 국가안보 등 관련 IT시스템 장애대응 업무는 근로시간 단축 예외업무로 지정을 건의 드립니다

- 대국민서비스의 장애 발생 시 신규채용이 불가능하고 빠른 복구가 최우선이므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 드림

III. 전의 참여 SW산업 유관단체 현황

연번	단체명	소재지	회원사 현황
1	소프트웨어공제조합	서울	2,024개
2	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	서울	68개
3	한국IT서비스산업협회	서울	61개
4	한국PMO협회	서울	25개
5	한국SW기술진흥협회	경기	68개
6	한국SW산업협회	서울	9,202개
7	한국SW저작권협회	서울	110개
8	한국상용SW협회	서울	190개
9	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	서울	203개
10	한국정보산업연합회	서울	142개
11	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	서울	312개

※ 순서: 단체명 가나다순